

대전광역시소비자보호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1996. 3. .

제 출 자 : 대전광역시장

1. 제안이유

- 소비자의 기본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장 및 사업자의 의무와 소비자단체 및 소비자의 역할을 규정하고, 소비자보호 시책의 종합적인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등을 규정하므로써
- 소비자보호 중심의 자치행정기반을 구축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쟁 질서를 확립하므로써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환경을 구현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보호를 위한 시장의 책무와 소비자의 역할등을 명시함(안 제1조 내지 제5조)

나. 시장은 소비자의 건강상의 위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에 대하여 판매금지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시민생활과 밀접한 기본생필품에 대하여 가격 및 수급 상황등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함
(안 제6조 내지 제11조)

- 다. 소비자 피해로부터 소비자가 적절한 보상과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기관 및 소비자단체, 사업자로 하여금 소비자 상담실을 설치 운영토록하고, 소비자가 스스로의 권익보호를 위한 단체의 조직운영과 육성지원을 위한 행·재정적인 보조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지원대상 및 기준등에 대하여는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안 제12조 내지 제16조)
- 라. 사업자는 소비자의 건강상의 위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미치는 결함 상품의 제공방지와, 상품의 정확한 표시로 소비자의 자주적이고 건전한 소비생활을 보장하고, 부당거래 조건의 제시 및 불량계량행위, 과장 광고·선전행위등을 제한 할 수 있도록 규정하므로써 소비자보호 활동에 대한 사업자의 당연한 협조의무를 명시함 (안 제17조 내지 제23조)
- 마. 소비자가 물품이나 용역의 잘못된 가격, 품질, 안전성, 표시, 중량, 거래방법, 거래조건 등으로 인하여 재산상의 위해를 입은 경우 각 행정기관 및 소비자보호 단체에 설치된 소비자 상담실에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와 관련하여 처리기준과 요령 및 절차등을 명시하고 필요한 경우 소비자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24조 내지 제29조)
- 바. 소비자단체등과 함께 사업자의 불공정 거래행위등에 대한 조사 활동과 그에 따른 결과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해당 사업자에 시정·권고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므로써 시와 소비자단체가 소비자보호 활동에 있어서 유기적인 공조체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 내지 제31조)

- 사. 시장은 소비자피해구제 처리시 사실 진위여부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전국적인 사항으로 집단 다발적인사항, 사업자와 소비자 당사자간 일방이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알선·조정을 담당할 수 있도록 소비자분쟁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32조 내지 제37조)
- 아. 소비자보호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법등에서 위임하고 있는 한도내에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부과 기준등에 대하여는 시행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안 제38조 내지 43조)

3. 참고사항

1. 관계법령 근거 (별첨)
2. 시민공개토론회 개최 : '96. 1. 25(시민회관 소강당)
 - ① 소비자보호조례 시민공개토론회 개최 안내서
 - ② 소비자보호조례 제안서
 - ③ 시민공개토론회 개최결과
3. 입법예고실시 : '96. 1. 11 ~ '96. 1. 31(20일간)
※ 입법예고기간중 이의신청 없었음

대전광역시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소비자보호조례안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이 조례는 소비자의 기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사업자의 의무와 소비자 및 소비자 보호단체의 역할을 규정하고, 소비자보호시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자”라 함은 물품을 제조(가공 및 포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수입·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소비자”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및 용역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자 또는 소비자보호법 시행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3. “소비자단체”라 함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내지 증진시키기 위하여 소비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소비자의 기본권리) 소비자는 모든 물품·용역에 대한 소비생활에 있어 스스로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본권리를 갖는다.

1. 모든 물품 및 용역으로 인한 건강상의 위해 또는 재산상의 손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2. 물품은 용역의 선택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물품 및 용역을 사용 또는 이용함에 있어서 거래의 상대방, 구입, 장소, 가격, 거래조건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
4.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대전광역시(이하“시”라 한다)와 자치구(이하 “구”라 한다)의 정책과 사업자의 사업활동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 시킬 권리
5. 물품 및 용역의 사용 또는 이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 공정한 절차에 의하여 적절한 피해구제 및 보상을 받을 권리
6. 합리적 소비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7.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제4조(소비자의 역할) ①소비자는 스스로의 안전과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고, 민주적인 사고와 적극적인 행동으로 자신의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②소비자의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활동을 지향하고, 불량상품 및 불공정거래행위등에 대한 감시활동을 전개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소비자 만족 위주의 제품생산 및 경영실천을 유도하여야 한다.

③소비자는 모든 반환경적인 행위와 상품을 지속적으로 감시하므로써 사업자로 하여금 환경친화적 상품공급에 힘쓰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①시장은 시민의 합리적 소비생활과 실질적인 권익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소비자보호에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개선
2. 소비자보호를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추진

3. 소비자의 건전한 조직활동의 지원육성

4. 건전한 소비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

②시장은 소비자보호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국가의 정책을 반영하고 한국소비자보호원 및 타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2장 소비자의 권리보호

제6조(손해 및 위해방지) ①시장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상품의 성분·성능·가격·용도·사용요령·제조년월일 또는 유통기한,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표시도록 할 수 있다

②시장은 소비자의 안전 또는 이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물을 수거하여 전문시험 검사기관등에 시험검사를 의뢰하고, 소비자에게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시장은 소비자의 건강상의 위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이 있을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판매금지를 시킬 수 있다

제7조(시민생활의 안정대책) ①시장은 시민의 기본생활 필수품목으로 생활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 가격 및 수급상황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적절한 통제와 규제로 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가격등의 정보를 관계기관, 단체, 소비자등에게 제공하고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제8조(긴급 생활물자에 대한 조치) ①시장은 중대한 자연적, 인위적, 재난으로 인하여 기본생활필수품의 수급과 가격안정에 차질이 있거나 그 우려가 있을 경우, 사업자에게 주무부처 장관에 의해 고시된 최고가격 범위내에서 권장소비자가격 및 판매 수량등의 제한 또는 판매중지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긴급생활 물자를 생산·판매·제조하는 사업자는 이를 준수하여 시민생활 안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생활안정물자의 매입 및 배부) ①시장은 시장기능의 규제만으로 시민의 생활안정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매입하여 시민에게 배부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매입가격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격으로 한다.

③시장은 긴급 생활물자의 확보에 필요한 재원 및 소요 물량 확보를 위하여 관련부처, 사업자, 타 지방자치 단체등과 긴밀히 협조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0조(소비자협동조합과 공동구매) 시장은 제9조제1항의 경우 소비자 협동조합과 공동으로 구매를 추진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구매 알선이나 자금지원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1조(공정거래 질서의 확립)시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비자의 안전과 권리보호를 위하여 사업자에 대한 지도단속 및 감독활동등으로 공정한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소비자단체 육성지원

제12조(소비자상담실 설치 및 운영) ①시장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적

절한 보상과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시와 구 및 소비자단체, 사업자로 하여금 소비자상담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비자상담실을 설치 운영할 경우 2명 이상의 상담전문인원을 두어야 한다.

제13조(소비자보호 교육 및 정보제공) ① 시장은 소비자의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상품에 관한 지식의 보급 및 정보제공 등의 활동과 합리적인 소비생활에 대한 교육등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민간 소비자단체등과 협조하여 소비자 종합정보센타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소비자보호단체의 육성지원) ① 시장은 소비자가 스스로 자신의 권익보호를 위한 보호단체를 조직할 경우 이를 지원 육성하여야 하며 필요시 그에 따른 재정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비자단체의 등록요건, 절차 및 지원내용, 지원기준등을 규칙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15조(소비자보호협정의 체결) ① 시장은 시민의 소비생활 안정과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와 소비자 보호단체간의 협정(이하“소비자보호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토록 권유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비자보호협정을 체결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했을 경우 그 내용을 공보 또는 시보등에 게재하여 공표하고, 성실한 이행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6조(시험 · 검사의뢰) ① 소비자보호단체는 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하여 필요시 전문 시험 검사기관 등에 관계 물품의 시험검사를 의뢰 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시험, 검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시장은 소비자단체가 물품 및 용역의 규격, 품질, 안전성등에 관하여 시험, 검사 또는 조사 할 수 있는 시험·검사시설을 설치 운영할 경우 시설비, 장비 구입비, 인건비, 운영비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장 사업자의 의무

제17조(결함상품의 제공방지)①사업자는 소비자의 건강상의 위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미치는 상품등(이하“결함상품등”이라 한다.)을 제공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사업자는 취급상품등에 있어 소비자의 안전을 위하여 위해 또는 손해의방지, 품질 및 기술의 향상,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사업자는 결함상품등이 발생시 이를 즉시 공표하고 그에 따른 해당 상품의 회수, 제조판매등의 중지, 피해자에 대한 보상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상품의 표시)사업자는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과 소비생활을 위하여 관계 규정에 의한 상품의 성분·성능·가격·용도·사용요령·제조년월일·유통기한등 필요한 사항을 적정하게 표시하여 소비자의 안전과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거래조건의 명시)①사업자는 소비자가 상품등의 구입 및 용역의 이용등에 있어서 거래조건을 명시하여 소비자의 불만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소비자가 일방적으로 불리하거나 불평등한 조건등을 제시하지 않아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경우로써 사업자의 불평등한 거래조건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권리가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행위의 시정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20조(계량의 적정화) ①사업자는 상품등의 공급에 있어 소비자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부당 계량행위나 불량계량기의 사용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시장은 소비자가 제1항의 불법·부당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사업자가 이를 위반시 관계 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포장 및 규격의 적정화) ①시장은 소비자의 선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포장 및 규격의 적정화를 위한 필요한 기준을 설정 고시 할 수 있다

②사업자는 관계규정에 의한 포장 및 규격을 준수하여야 하며, 상품의 내용을 과장하거나 환경오염을 초래하는 과대포장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2조(허위과장 광고 및 선전의 제한)사업자는 상품의 내용과 성능을 사실과 다르게 허위광고·선전을 하거나 소비자가 실제보다 오인 할 수 있는 과장 광고나 선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3조(소비자 상담기구 설치운영)사업자는 소비자의 불만과 피해구제 발생시 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소비자 상담기구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5장 소비자의 피해구제

제24조(소비자피해구제 접수처리) ①소비자가 물품이나 용역의 잘못된 가격, 품질, 안전성, 표시, 중량, 거래방법, 거래조건 등으로 인하여

건강상의 위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행정기관, 한국소비자 보호원, 소비자단체,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 등(이하“행정기관등”이라 한다)에 설치된 소비자상담실에 서신, 방문, 전화등의 방법으로 피해구제를 신청 할 수 있다.

②행정기관등이 소비자피해구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배상책임자를 규명하여 교환, 환불, 시정, 해약등의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소비자피해구제의 신속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행정기관과 소비자 단체간에 상호 자료 및 정보제공등 긴밀한 업무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25조(자료의 검사·제출 요구)①시장은 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로 하여금 사실여부를 증명 할 수 있는 자료의 검사 및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②시장은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시험검사기관 등에 관계 물품에 대한 시험·검사를 의뢰 할 수 있다.

③사업자는 소비자피해 구제를 위한 행정기관등의 자료 제출요구, 합의, 권고, 알선·조정등에 응하여야 하며, 소비자피해 보상규정에 의한 적절한 보상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6조(소비자피해구제 처리요령 및 절차)시장은 신속하고 공정한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처리요령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제27조(청약철회의 기본요건)다른 법령등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소비자가 물품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등에 있어 다음 각호의 경우 청약

을 철회 할 수 있는 기본요건으로 한다.

1. 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은 미성년자와의 계약
2. 허위 · 사기 · 강박등에 의한 계약
3. 사용 · 소비에 의해 가치가 현저히 저하되는 불량상품의 구매 계약
4. 계약후 10일이 경과되지 않은 것으로서 물품의 사용 ·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은 계약, 즉 구매자등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상품이 멸실 또는 훼손되지 않은 경우와 사용 또는 소비에 의해 가치가 현저히 감소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제28조(소비자피해 구제처리)①시장은 소비자피해구제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그 처리상황을 소비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 처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시장은 제1항의 경우 당사자간 일방이 소송을 제기한 때에는 이의 처리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사실 진위여부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와 전국적인 사항으로 집단 다발적인 사항 및 사업자와 소비자 당사자간 일방이 합의권고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시 소비자분쟁처리위원회에 알선 · 조정을 요청하거나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분쟁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29조(소비자 소송비용의 지원)①시장은 소비자가 사업자를 상대로 하는 소송(이하“소비자소송”이라 한다)에 있어, 다음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 할 수 있다.

- 1.동일한 물품 · 용역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다수인 경우
- 2.소비자가 스스로 사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소비자피해에 대한 불만의 처리가 시 소비자분쟁처리위원회 처리 절차를 거친 경우

② 소비자소송의 지원결정은 시 소비자분쟁처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지원금액은 소비자소송에 소요되는 비용을 무이자로 대부하며, 대부기간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시장은 소송결과 소송비용의 지원 대부금을 소비자가 상환하지 못할 만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와,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부금의 상환을 일부 또는 전액 면제할 수 있다.

제6장 조사, 권고 및 공표

제30조(불공정거래행위의 조사) ① 시장은 사업자가 관계법령이나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불공정 거래행위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실태를 조사토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조사활동은 소비자단체와 공동으로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제31조(권고 및 공표) ① 시장은 사업자에게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 활동에의 협조를 권고 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소비자보호단체등의 소비자피해 구제처리에 따른 알선·조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사업자에게 이의 시정을 권고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업자가 제1항의 권고에 응하지 않을 경우 그 결과를 공표 할 수 있다.

③ 소비자보호단체는 소비자의 권리보호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등에 대하여 조사를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공표 할 수 있다.

제7장 소비자분쟁 처리위원회

제32조(소비자분쟁처리위원회 설치 · 운영) 소비자피해와 불만 발생시 적절한 피해보상의 알선 · 조정을 위하여 시에 소비자분쟁처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제3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경제국장이 된다.

③ 위원회 위원은 소비자단체, 사업자, 학계, 법률가 또는 관계 전문가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시장은 사안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명 이내의 자문 위원을 위촉 할 수 있다.

제3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소비자보호 관련 조례 · 규칙의 제 · 개정에 대한 의견제시
2. 소비자의 안전 · 위해 상품등에 대한 의견제시
3. 소비자 피해구제의 알선 · 조정
4. 소비자 소송에 관한 사항
5. 소비자보호 및 피해구제를 위한 조사 · 공표에 관한 사항
6. 소비자보호 협정의 체결 · 변경 · 해제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한 사항

제35조(의견청취 및 출석요구) 위원회의 조사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고 인정될 때 위원장은 그 사안에 관계되는자(관련 전문가를 포함한다)를 출석시켜 설명을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36조(실비보상)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각종위원회실비
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37조(조정결정 사항)①위원회의 조정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조정결정 사항은 소비자·사업자 모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제1항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조정결정 사항에 대하여 수락 거부의 사가 있을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서면에 의하여 수락거부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8장 과태료 부과

제38조(과태료)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1.제8조제1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판매가격 및 판매수량의 제한 또는 판매중지 명령을 위반한 자
- 2.제12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소비자상담실을 설치 운영하지 않은 사업자
- 3.제17조 제3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위해상품의 회수, 제조판매등의 중지, 피해자에 대한 보상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이를 태만히 하여 그 피해를 현저히 확대시킨 자
- 4.제20조제1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부당계량행위나 불량계량기를 사용한 자
- 5.제21조제2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설정고시된 포장 및 규격을 위반하여 제품을 제조 판매한 자

6. 제25조제3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행정기관등의 자료의 검사 및 제출 요구시 이를 회피하거나 불응한 자와 허위자료를 제출한 자

제39조(과태료의 부과징수) ① 시장은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 부과금액을 명시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 행위의 동기와 그 경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40조(청문 또는 의견진술) 시장은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41조(과태료 부과기준)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2조(이의 신청) ①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43조(시행규칙)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근거

○ 소비자보호법

제 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
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의무를 진다.

1. 관계법령 및 조례의 제정 및 개폐
2.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 개선
3.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실시
4. 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활동의 지원 · 육성

○ 지방자치법

제 9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
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농림 · 상공업등 산업진흥에 관한 사무, 소비자보호 및 저축의 장려

제 15조 (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
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16조 (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20조 (조례위반에 대한 과태료) ①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써 조례위반 행위에 대하여
여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②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할구역안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 징수한다.

소비자보호조례제정추진상황

◇ 추진방침

- 소비자보호 중심의 지방행정기반구축
-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 경쟁질서의 확립
- 소비생활의 합리화를 위한 바람직한 가치관형성 및 발전도모

◇ 추진상황

- 한국소비자보호원(정책연구부)협의 ('95. 9월)
- 소비자보호조례 초안작성 (조문 38조, 부칙1조)
 - ※ 소비자보호조례안서 작성
- 소비자단체 의견수렴회의 개최 - 주부교실, YMCA, YWCA, 부인회
 - [1차 : 실무회의 개최 ('95. 9월)
 - [2차 : 간담회 개최 ('95. 10월 6일)
- ※ 변호사 의견수렴 (이용철변호사 - 소비자보호전문가)
- 1차 수정안 작성 (조문 46조, 부칙1조) - '95. 11월
- 조례안 입법예고 : 시공보게재 ('96. 1. 11 ~ '96. 1. 31)
- 시민공개토론회개최 : 소비자단체 회원등 350명
('96. 1. 25 시민회관 소강당)
 - ※ 토론자 : 한국소비자보호원 이치영 교수외 5명
- 2차 수정안 작성 : 시민의견수렴반영 ('96. 2월)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차 : '96. 3. 4(월) - 심의보류(이해하기쉬운용어사용)
 - [2차 : '96. 3. 8(금) - 수정가결(조문43조, 부칙1조)